

2021년도 2-9차 (11월 11일 개강반)

보육실습 운영계획서

I. 보육실습이란

-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지식, 기술 태도 등을 보육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보육 교사로서 교육·훈련하는 것으로 전공필수 과목입니다.

II. 개요

- 2021년 2-9차시 보육실습 학습반

- 개강일 : 2021년 11월 11일(목)
 - 종강일 : 2022년 2월 23일(수)

- 실습인정기간

- 2021년 11월 15일(월) ~ 2022년 2월 4일(금)[12주간] 240시간 이상 진행
※ 직접실습 : 6주 연속실습 / 240시간 이상/ 평일(월~금) 중에만 가능
※ 직접+간접실습 : 4주 직접실습(160시간) / 2주 간접실습(80시간)
※ 1일 8시간/1일 8시간 미만 또는 초과 불가(오전 9시~오후 7시 이내만 가능)
※ 공휴일 또는 어린이집 방학으로 인한 결근 시 실습종료일 기준으로 추가 실습 진행 必

- 실습시간현황

구분	기존실습	간접실습
기관실습	240시간 [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]	160시간 [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] + 80시간 [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체]
온라인학습(컨텐츠)		동일 [메가원격 강의실Page의 7주 강의 수강]

- 간접실습 :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 내 특강·모의수업, 과제 등의 교육을 통하여 실습시간(80시간) 인정

- 간접실습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. 직접실습으로 240시간 완료하신 분들은 간접실습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.

*간접실습에 관한 자세한 공지는 간접실습 운영계획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
□ 출석수업일정

구분	지역	분반	일자	시간	장소	비고
오리엔테이션	수도권	1				
	부산	2				
	대전	3				
	대구	4				
최종보고회	수도권	1				
	부산	2				
	대전	3				
	대구	4				

* 오프라인 출석수업은 온라인강의로 대체[별도의 출석수업 없음]

- * 보육실습 강의실 1주차 1교시 강의 수강
- * 1주차 1교시 강의 미수강 시 실습 이수 불가
- * 해당 일정은 개강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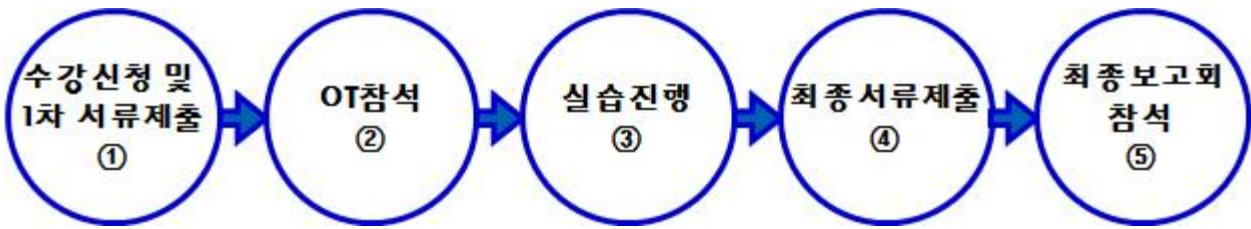
III. 실습 관련 서류제출 일정

No.	제출시기	제출일자	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1	학습자모집 및 1차서류 제출	~11/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보육실습 신청서 ·보육실습생 서약서 ·보육실습생 신상카드 ·실습기관 현황카드 ·실습기관 인가증 사본(고유번호증 불가) ·지도교사 증빙서류 사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집: 보육교사 1급 자격증 - 유치원: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	등기	<p>1. 신청서, 서약서, 신상카드 <u>반드시 자필서명</u></p> <p>2. 실습기관 및 지도자 증빙서류 외 모두 원본제출</p> <p>3. 고유번호증 불가 -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가능</p> <p>4. 지도교사님이 반을 맡고 있어야 함</p>
2	실습진행	11/15~2/4	·실습진행		
3	1차 과제제출	1/6~2/2	·일화기록에 의한 영유아관찰(1차과제)	온라인	
4	실습일지 및 평가서류 제출	~2/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실습일지 제본 ·실습평가서 1부(기관작성) ·실습확인서 2부(기관작성) 	등기	모든 제출서류 <u>원본</u>

* 화이트 사용 안 됨

IV. 보육실습 진행절차

□ 전체진행절차



□ 절차 별 상세내용

절차	상세 내용
① 수강신청 및 1차서류제출 (~11/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강신청 및 수강료 입금 완료(분반 설정) - 실습기관 섭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실습기관 및 지도자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[□ 실습기관기준] 내용 참조 - 1차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보육실습 신청서 [자필서명필수] > 보육실습생 서약서 [자필서명필수] >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[자필서명필수] > 실습기관 현황카드 >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(고유번호증 불가, 국공립의 경우 위탁계약증서로 가능) >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(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) > 실습지도교사님이 반을 맡고 있어야 함(반을 맡고 있지 않으면 안 됨) - 제출 기한 내에 서류 <u>등기</u> 발송 <p style="color: red;">*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</p>
② OT참석 (온라인 대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출석 - 보육실습 온라인 강의 1주차 1교시 수강 <p style="color: red;">* 개강 이후 분반 변경은 불가능</p> <p style="color: red;">* 공결사항 적용되지 않으며, 미수강시 과목 이수 불가</p>
③ 실습진행 (11/15~2/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기 1차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후 동의서 수신 후 학습자는 실습가능(코로나19로 인해 실습 기간 전에 동의서가 오지 않아도 실습 가능) - 실습은 실습인정기간 내에만 가능 - 실습은 6주 연속으로 진행되어야 하며, 평일(월~금)에만 가능(주말실습 불가) - 간접실습 병행할 경우, 직접실습 4주, 간접실습 2주로 진행 - 최소 240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, 1일 8시간을 미만/초과할 수 없으며, 실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(야간실습 불가) - 온라인 수강도 병행해야함 - 실습진행 기간에는 지도교수의 기관방문이 이루어짐
④ 온라인 과제 제출 (1/6~2/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을 통한 1차과제 제출(일화기록에 의한 영유아 관찰)

<p>⑤ 최종서류제출 (~2/8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서류제출[원본이여야만 인정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실습일지 제본 1부 > 실습평가서 1부(기관작성) > 실습확인서 2부(기관작성) - 제출기한 내에 발송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*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</p>
<p>⑥ 최종보고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* 보육실습 확인서는 학습자 집 주소로 등기발송</p>

□ 실습기관 기준

구 분	내 용
실습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원 15명 이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기간에 평가인증을 유지(또는 평가제 평가 결과 A, B등급) 어린이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증빙서류 : 평가인증서 사본 혹은 시설 인·허가증 사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치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증빙서류 : 시설 인가증 사본 - 국공립 유치원, 병설유치원 : 별도의 인가 확인서 및 공문 필요(교육원 연락바람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확인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어린이집정보개포털(http://info.childcare.go.kr/info/main.jsp) ▶ 통합정보공시→어린이집·유치원 찾기→유치원, 어린이집 검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정기간 반드시 확인 - 유치원의 경우 제공서비스에 방과후과정 체크 확인
실습 지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린이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담임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증빙서류 : 1급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·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음 · 단, 가정어린이집(20인 이하)에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 겸직 원장이 실습지도 가능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치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담임교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증빙서류 :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사1인 실습정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도자 별 실습정원은 1인당 최대 3명 이내만 가능
실습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실습시간은 240시간 이상으로 함 · 1일 이수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함 (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이내에 진행된 실습만 가능) · 실습은 시작일로부터 6주 연속으로만 가능 · 간접실습을 병행할 경우 직접실습 4주 연속으로만 가능
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원 실습운영 방침 상 6주 연속의 실습을 하지 않을 경우, 실습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· 단,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교육원과 사전 협의 하에 가능하나 실습인정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함

V. 보육실습일지 작성

보육실습일지

- 실습일지는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- 보육실습일지는 워드타이핑 및 자필 가능
- 모든 양식은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함
(단, 반일보육활동계획안과 일일보육활동 계획안은 택 1 가능)
- 보고서 양식 외의 추가로 양식을 첨부하여도 무방함
- 제공된 양식의 순서대로 작성 후 완성된 보고서는 본드제본 후 등기발송

실습일지작성

- 「보육실습일지」 양식 내의 「실습일지」는 실습을 진행한 일자에 따라 작성하며, 매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함
- 실습 시작시간, 끝나는 시간 반드시 기입(본인이 실습한 시간만 작성해야 함)
- 비는 시간 없이 활동 시간을 이어서 작성해야 함
- 실습일지는 실습을 진행한 일자에 따라 매일 작성,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을 기입, 당일 일과 후 또는 익일 실습지도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도록 함
- 실습일지에는 실습지도교사의 의견 및 도장(또는 서명)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VI. 보육실습 주의사항

*기관별 자격증 신청 시 유의할 점

기관	유의점
국공립 어린이집	인가증이 없음 위탁계약증서로 대체 가능
국공립 유치원	인가증이 없음 별도의 유치원 공문 및 시설 인가 확인서 필요함
병설유치원	인가증이 없음 별도의 초등학교 학교장 공문 및 시설 인가 확인서 필요함

- 국공립이 아닌 그 외 기관은 인가증으로 증빙서류 가능
- 국공립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 실습을 하실 경우, 반드시 먼저 교육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-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을 필히 확인하고 실습가능여부를 검토한 후에 실습을 신청하도록 합니다. 추후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이 총족되지 않을 시 실습취소 및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보육실습 과목 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를 섭외할 것을 권장합니다.
- 실습과목은 사전 공지된 실습기간 내에 실습완료 및 보고서제출 등을 완료해야

이수 가능합니다.

- 개강 이후 분반 변경은 불가하며, OT 참석 때의 요일 및 시간은 최종보고회 때 동일하게 적용 됨.**
- 실습과목은 실습뿐만 아니라 **온라인 강의 출석도 병행**하여야 하며, 온라인 강의실의 공지사항을 자주 체크하며, 게시판을 통해 지도교수님 및 실습을 수강하는 학습자들과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 등 학습 참여의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합니다.
- 실습에 임하면서 보육실습 온라인강의를 수강(실습시간 내의 강의수강은 인정되지 않음)하여야 하며, 출석수업 2회(OT, 최종보고회)에 모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. 온라인 강의 및 출석 수업을 포함하여 출석률이 80% 미만일 경우 실습과목이 이수되지 않습니다. (출석 수업 1회라도 불참 시에는 이수불가)
- * 코로나19로 인해 출석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된 경우, 온라인 강의 미수강 시 과목 이수 불가
- 최종평가회 출석 시 학습자에게 교부되는 **보육실습확인서 1부는 학습자가 보관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 보육인력국가자격증센터로 제출합니다.**(서류보관에 유의)
- 실습이 모두 종료된 후,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집 주소(직장주소)로 확인서를 등기 발송해드립니다. (**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 및 업데이트 必**)
- 보육실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보고서 파일양식은 **개강날(11/11)에 강의실 공지 사항에 올려드립니다.** 실습생분들께서는 제출 기한 내에 실습처를 선후하여 1차 서류를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.
- 1차 서류가 교육원에 도착했는지 여부는 우체국 알람을 확인해주시고, **1차 서류에 문제가 있을 시에만 연락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**
- 실습처로 보내드리는 교육원 공문은 실습 시작 전에 실습처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드립니다. 공문 발송 후 실습생분께 문자 안내드리며,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.
- 공문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실습은 기간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.** (공문이 실습처로 도착하지 않았다하여 실습을 못하는 것이 아님)

* 자격증 신청 시 유의할 점

-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후 바로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완서류 요청 및 자격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**
 - 반드시,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- 먼저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신 후, 자격증 나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완서류를 요청받았을 경우 자격증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